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유완백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목 변경

-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나. 학교폭력 등 재정의(안 제2조)

- 학교폭력 범위 확대
  -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
-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추가

다.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4조)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사업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 사업
4.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 사업
5. 청소년상담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 운영 사업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사업
7. 따돌림 등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위기개입 사업
8.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명시(안 제6조)

- 기본계획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매년 수립
- 계획의 수립과 자문 기능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문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마.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간소화(안 제5조)

- 실무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

바. 긴급전화,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대책 마련 근거 제시(안 제8조, 안 제9조)

- 긴급전화 설치 근거(안 제8조)
-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대책 마련 근거 제시(안 제9조)

## 4. 검토의견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달라진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확대하고,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충청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개정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